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10호 2025. 9. 29. (월)

훈 령

- 목포시 공무 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안 발령 2
- 목포시 공무원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 일부개정 발령 8

공 고

- 명예도로명 부여 공고 17
-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18
- 목포시 금고 지정 공고 26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목포시 훈령 제870호

「목포시 공무 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9월 29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공무 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안

목포시 공무 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포함 하여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를 “포함하여 위원 9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단 중 “위원은 기획관리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해양수산환경국장, 도시공원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를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해양수산환경국장, 도시공원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무국외출장 업무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2. 시민·사회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 등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정보유통망에 등록할 때 표절여부 및 내용·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별지 제10호의 서식”을 “별지 제10호 서식”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별지는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 함 하여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 포함하 여 위원 9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 원장은 자치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관리국장, 관광문화 교육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해 양수산환경국장, 도시공원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② ----- -----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 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미래전 략산업국장, 해양수산환경국장, 도시공원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이 위촉한다.
<신 설>	1. <u>공무국외출장 업무 경험이 풍 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u>
<신 설>	2. <u>시민·사회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u>
<신 설>	3. <u>그 밖에 시장 등이 경험과 전 문성을 인정한 사람</u>
③ (생 략) <신 설>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제17조(사후관리) ① (생략)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6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 허가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정보유통망에 등록할 때 표절여부 및 내용·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17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10호 -----

-----.

제18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
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
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
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별지 제6호 서식]

현행						개정안																																																																																																																																																													
공무국외여행심사의결서 (제11조제1항 관련) ☐ 공무국외여행심사 의결사항 <table><thead><tr><th colspan="3">여행자</th><th rowspan="2">여행기간</th><th rowspan="2">여행국</th><th rowspan="2">여행목적</th><th rowspan="2">의결사항</th></tr><tr><th>소속</th><th>직급</th><th>성명</th></tr></thead><tbody><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body></table> 목포시공무국외여행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심사 의결 함. 년 월 일 <table><thead><tr><th rowspan="2">직책</th><th rowspan="2">직위</th><th rowspan="2">성명</th><th colspan="2">의결표시</th><th rowspan="2">비고</th></tr><tr><th>가(의견)</th><th>부(의견)</th></tr></thead><tbody><tr><td>위원장</td><td>부시장</td><td></td><td></td><td></td><td></td></tr><tr><td>부위원장</td><td>자치행정복지국장</td><td></td><td></td><td></td><td></td></tr><tr><td>위원</td><td>기획관리국장</td><td></td><td></td><td></td><td></td></tr><tr><td>위원</td><td>관광문화교육국장</td><td></td><td></td><td></td><td></td></tr><tr><td>위원</td><td>미래전략산업국장</td><td></td><td></td><td></td><td></td></tr><tr><td>위원</td><td>해양수산환경국장</td><td></td><td></td><td></td><td></td></tr><tr><td>위원</td><td>도시공원국장</td><td></td><td></td><td></td><td></td></tr><tr><td>위원</td><td>안전건설교통국장</td><td></td><td></td><td></td><td></td></tr></tbody></table>						여행자			여행기간	여행국	여행목적	의결사항	소속	직급	성명								직책	직위	성명	의결표시		비고	가(의견)	부(의견)	위원장	부시장					부위원장	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	기획관리국장					위원	관광문화교육국장					위원	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	해양수산환경국장					위원	도시공원국장					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					공무국외여행심사의결서 (제11조제1항 관련) ☐ 공무국외여행심사 의결사항 <table><thead><tr><th colspan="3">여행자</th><th rowspan="2">여행기간</th><th rowspan="2">여행국</th><th rowspan="2">여행목적</th><th rowspan="2">의결사항</th></tr><tr><th>소속</th><th>직급</th><th>성명</th></tr></thead><tbody><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body></table> 목포시공무국외여행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심사 의결 함. 년 월 일 <table><thead><tr><th rowspan="2">직책</th><th rowspan="2">직위</th><th rowspan="2">성명</th><th colspan="2">의결표시</th><th rowspan="2">비고</th></tr><tr><th>가(의견)</th><th>부(의견)</th></tr></thead><tbody><tr><td>위원장</td><td>부시장</td><td></td><td></td><td></td><td></td></tr><tr><td>부위원장</td><td>자치행정복지국장</td><td></td><td></td><td></td><td></td></tr><tr><td>위원</td><td>기획관리국장</td><td></td><td></td><td></td><td></td></tr><tr><td>위원</td><td>관광문화교육국장</td><td></td><td></td><td></td><td></td></tr><tr><td>위원</td><td>미래전략산업국장</td><td></td><td></td><td></td><td></td></tr><tr><td>위원</td><td>해양수산환경국장</td><td></td><td></td><td></td><td></td></tr><tr><td>위원</td><td>도시공원국장</td><td></td><td></td><td></td><td></td></tr><tr><td>위원</td><td>안전건설교통국장</td><td></td><td></td><td></td><td></td></tr><tr><td>위원</td><td>민간위원</td><td></td><td></td><td></td><td></td></tr></tbody></table>						여행자			여행기간	여행국	여행목적	의결사항	소속	직급	성명								직책	직위	성명	의결표시		비고	가(의견)	부(의견)	위원장	부시장					부위원장	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	기획관리국장					위원	관광문화교육국장					위원	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	해양수산환경국장					위원	도시공원국장					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	민간위원				
여행자			여행기간	여행국	여행목적	의결사항																																																																																																																																																													
소속	직급	성명																																																																																																																																																																	
직책	직위	성명	의결표시		비고																																																																																																																																																														
			가(의견)	부(의견)																																																																																																																																																															
위원장	부시장																																																																																																																																																																		
부위원장	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	기획관리국장																																																																																																																																																																		
위원	관광문화교육국장																																																																																																																																																																		
위원	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	해양수산환경국장																																																																																																																																																																		
위원	도시공원국장																																																																																																																																																																		
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																																																																																																																																																																		
여행자			여행기간	여행국	여행목적	의결사항																																																																																																																																																													
소속	직급	성명																																																																																																																																																																	
직책	직위	성명	의결표시		비고																																																																																																																																																														
			가(의견)	부(의견)																																																																																																																																																															
위원장	부시장																																																																																																																																																																		
부위원장	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	기획관리국장																																																																																																																																																																		
위원	관광문화교육국장																																																																																																																																																																		
위원	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	해양수산환경국장																																																																																																																																																																		
위원	도시공원국장																																																																																																																																																																		
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	민간위원																																																																																																																																																																		

목포시 훈령 제870호

「목포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9월 29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목포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3제1항 중 “제41조 1항 4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시간”을 “35시간”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직근로자 정수표 (제6조 제4항 관련)

1. 공무직근로자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 보 수 로 원	환 미 화 경 원
		소 계	행 보 정 조	시 장 유 설 비 지	현 지 점	장 도 검		
계	532	350	271	49	30	14	168	
감 사 실	1	1	1					
기 획 예 산 과	1	1	1					
홍 보 과	3	3	3					
세 정 과	9	9	9					
회 계 과	6	6	3	3				
자 치 행 정 과	11	11	11					
사 회 복 지 과	12	12	12					
노 인 장 애 인 과	7	7	7					
여 성 가 족 과	47	47	47					
민 원 봉 사 실	12	12	12					
관 광 과	13	13	12	1				
관광거점도시추진단	1	1	1					
문 화 예 술 과	3	3	2	1				
인 재 육 성 과	7	7	7					
스 포 츠 산 업 과	1	1	1					
지 역 경 제 과	1	1	1					
전 략 산 업 과	1	1	1					
청 년 인 구 과	1	1	1					
해 양 개 발 과	1	1	1					
기 후 환 경 과	1	1	1					
자 원 순 환 과	170	2	2				168	
건 축 행 정 과	2	2	2					
도 시 재 생 과	4	4	4					
도 시 유 산 과	6	6	6					
공 원 녹 지 과	14	14	1	13				
재 난 안 전 과	23	23	23					
건 설 과	9	1	1			8		
교 통 행 정 과	26	26	3	9	14			
대 중 교 통 과	3	3	3					
의 회 사 무 국	9	9	9					
보 건 위 생 과	4	4	3	1				
건 강 정 책 과	31	31	31					
하 당 보 건 지 소	24	24	22	1	1			
수 도 과	9	9	2	1	6			
하 수 과	7	1	1			6		
남 해 수 질 관 리 과	1	1	1					
북 향 수 질 관 리 과	3	3	1	2				
문예시설관리사무소	10	10	6	4				
체육시설관리사무소	13	13		4	9			
목포자연사박물관	16	16	11	5				
자동차등록사무소	5	5	5					
환경시설관리사무소	4	4		4				

[별표 2]

징 계 양 정 기 준 (제51조 관련)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정직-감봉	해고-정직	해고-정직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해고-정직	해고	해고

<일반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유형				
1. 성실의무 위반 가.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다. 직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 라. 병가·휴직을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경고 감봉
2. 지시사항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을 준 경우 나. 형사입건으로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경고 경고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가. 불법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나. 무단결근 다. 지각, 무단조퇴, 근무지이탈	해고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경고 경고 정직-감봉
4. 비밀엄수 위반	해고	정직-감봉	정직-감봉	경고
5. 친절·공정 의무 위반	해고	정직-감봉	정직-감봉	경고
6.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 등 성비위 관련 행위 나. 음주운전 다. 기타(사회적 물의 공무집행 방해 등)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 따름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름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7. 사내 폭력 및 가혹행위	해고	해고	정직	정직-감봉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경고

<음주운전 징계기준>

유 형 별	징계기준	비고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3)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4)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정직~감봉 정직 해고~정직 해고~정직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자전거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근로자"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 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정직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정직	
6.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나. 사망사고의 경우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2)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고~정직 해고 해고~정직 해고	
7. 운전업무 관련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 해고~정직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경과실이거 나, 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중과실 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해고	해고	해고	정직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해고	해고	정직	감봉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해고	해고	정직	감봉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해고	해고	정직	감봉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해고	해고	정직	감봉~견책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해고	해고	정직	감봉~견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

※ 비고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의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시장은 <u>제41조 1항 4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u> 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56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 <u>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u> ----- ----- ----- -----.
② 시장이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u>30시간</u> 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② ----- ----- ----- ----- <u>35시간</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1] 공무원근로자 정수표(제6조 제4항 관련)

1. 공무원근로자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 보 수 원	환 미 화 원
		소 계	행 정 조	시 설 유 지	현 장 도 점		
계	532	350	270	50	30	14	168
감 사 실	1	1	1				
기획예산과	1	1	1				
홍 보 과	3	3	3				
세 정 과	9	9	9				
회 계 과	6	6	3	3			
자치행정과	10	10	10				
사회복지과	12	12	12				
노인장애인과	7	7	7				
여성가족과	51	51	51				
민원봉사실	12	12	12				
관 광 과	13	13	12	1			
문화예술과	2	2	1	1			
인재육성과	4	4	4				
스포츠산업과	1	1	1				
지역경제과	1	1	1				
전략산업과	1	1	1				
청년인구과	1	1	1				
해양개발과	1	1	1				
기후환경과	2	2	2				
자원순환과	170	2	2				168
건축행정과	2	2	2				
도시재생과	1	1	1				
도시유산과	4	4	4				
공원녹지과	14	14	1	13			
재난안전과	23	23	23				
건 설 과	9	1	1			8	
교통행정과	26	26	3	9	14		
대중교통과	3	3	3				
의회사무국	9	9	9				
보건위생과	4	4	3	1			
건강정책과	31	31	31				
하당보건지소	29	29	27	1	1		
수 도 과	9	9	2	1	6		
하 수 과	7	1	1			6	
남 해 수 질 관 리 과	1	1	1				
북 항 수 질 관 리 과	3	3	1	2			
문 예 시 설 관리사무소	10	10	6	4			
체 육 시 설 관리사무소	14	14		5	9		
목포자연사 박물관	16	16	11	5			
자 동 차 등록사무소	5	5	5				
환 경 시 설 관리사무소	4	4		4			

개 정 안

[별표 1] 공무원근로자 정수표(제6조 제4항 관련)

1. 공무원근로자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 보 수 원	환 미 화 원
		소 계	행 정 조	시 설 유 지	현 장 도 점		
계	532	350	271	49	30	14	168
감 사 실	1	1	1				
기획예산과	1	1	1				
홍 보 과	3	3	3				
세 정 과	9	9	9				
회 계 과	6	6	3	3			
자치행정과	11	11	11				
사회복지과	12	12	12				
노인장애인과	7	7	7				
여성가족과	47	47	47				
민원봉사실	12	12	12				
관 광 과	13	13	12	1			
관 광 거 점 도시추진단	1	1	1				
문화예술과	3	3	2	1			
인재육성과	7	7	7				
스포츠산업과	1	1	1				
지역경제과	1	1	1				
전략산업과	1	1	1				
청년인구과	1	1	1				
해양개발과	1	1	1				
기후환경과	1	1	1				
자원순환과	170	2	2				168
건축행정과	2	2	2				
도시재생과	4	4	4				
도시유산과	6	6	6				
공원녹지과	14	14	1	13			
재난안전과	23	23	23				
건 설 과	9	1	1			8	
교통행정과	26	26	3	9	14		
대중교통과	3	3	3				
의회사무국	9	9	9				
보건위생과	4	4	3	1			
건강정책과	31	31	31				
하당보건지소	24	24	22	1	1		
수 도 과	9	9	2	1	6		
하 수 과	7	1	1			6	
남 해 수 질 관 리 과	1	1	1				
북 항 수 질 관 리 과	3	3	1	2			
문 예 시 설 관리사무소	10	10	6	4			
체 육 시 설 관리사무소	13	13		4	9		
목포자연사 박물관	16	16	11	5			
자 동 차 등록사무소	5	5	5				
환 경 시 설 관리사무소	4	4		4			

현행

(별표 2) 징계양정기준(제51조 관련)

<일반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악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악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악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유형				
1. 성실의무 위반 가.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다. 직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 라. 병가·휴직을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경고 감봉
2. 지시사항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을 준 경우 나. 형사입건으로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경고 경고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가. 불법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나. 무단결근 다. 지각, 무단조퇴, 근무지이탈	해고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경고 경고 정직-감봉
4. 비밀엄수 위반	해고	정직-감봉	정직-감봉	경고
5. 친절-공정 의무 위반	해고	정직-감봉	정직-감봉	경고
6.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 나. 성희롱, 성추행 다. 근무 중 음주 추태 라. 음주운전, 도박 마. 기타(사회적 물의 공무집행 방해 등)	해고	해고	정직	정직-감봉
7. 사내 폭력 및 가혹행위	해고	해고	정직	정직-감봉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경고

개정안

(별표 2) 징계양정기준(제51조 관련)

<일반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악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악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악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유형				
1. 성실의무 위반 가.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다. 직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 라. 병가·휴직을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경고 감봉
2. 지시사항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을 준 경우 나. 형사입건으로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경고 경고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가. 불법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나. 무단결근 다. 지각, 무단조퇴, 근무지이탈	해고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경고 경고 정직-감봉
4. 비밀엄수 위반	해고	정직-감봉	정직-감봉	경고
5. 친절-공정 의무 위반	해고	정직-감봉	정직-감봉	경고
6.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 등 성비위 관련 행위 나. 음주운전 다. 기타(사회적 물의 공무집행 방해 등)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 따름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름			
7. 사내 폭력 및 가혹행위	해고	해고	정직	정직-감봉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경고

<음주운전 징계기준>

유 형 별	징계기준	비고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자전거동 음주운전의 경우 나. 자전거동 외 음주운전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3)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4)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정직~감봉 정직 해고~정직 해고~정직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자전거동”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동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근로자”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라도 운전면허 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정직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정직	
6.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나. 사망사고의 경우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2)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고~정직 해고 해고~정직 해고	
7. 운전업무 관련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 해고~정직	

현행	개정안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table><tr><th>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th><th>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th><th>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 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th><th>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 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th><th>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th></tr><tr><td>1. 성폭력범죄</td><td></td><td></td><td></td><td></td></tr><tr><td>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td><td>해고</td><td>해고</td><td>해고</td><td>정직</td></tr><tr><td>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 한 성폭력범죄</td><td>해고</td><td>해고</td><td>해고 ~정직</td><td>정직</td></tr><tr><td>다. 공연(公然)음란행위</td><td>해고</td><td>해고</td><td>정직</td><td>감봉</td></tr><tr><td>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td><td>해고</td><td>해고</td><td>정직</td><td>감봉</td></tr><tr><td>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td><td>해고</td><td>해고</td><td>정직</td><td>감봉</td></tr><tr><td>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td><td>해고</td><td>해고</td><td>정직</td><td>감봉 ~견책</td></tr><tr><td>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td><td>해고</td><td>해고</td><td>정직</td><td>감봉 ~견책</td></tr><tr><td>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 매매</td><td>해고</td><td>해고 ~정직</td><td>정직 ~감봉</td><td>견책</td></tr></table> ※ 비교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의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 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 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해고	해고	해고	정직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 한 성폭력범죄	해고	해고	해고 ~정직	정직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해고	해고	정직	감봉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해고	해고	정직	감봉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해고	해고	정직	감봉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해고	해고	정직	감봉 ~견책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해고	해고	정직	감봉 ~견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 매매	해고	해고 ~정직	정직 ~감봉	견책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 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 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해고	해고	해고	정직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 한 성폭력범죄	해고	해고	해고 ~정직	정직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해고	해고	정직	감봉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해고	해고	정직	감봉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해고	해고	정직	감봉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해고	해고	정직	감봉 ~견책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해고	해고	정직	감봉 ~견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 매매	해고	해고 ~정직	정직 ~감봉	견책																																															

명예도로명 부여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목포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명예도로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9일

목 포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9. 29. ~ 10. 13. (15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명예도로명	도로구간 (청호로)		길이 (m)	부여사유	사용기간
	시작 지점	끝 지점			
해양경찰서해수호로	청호로 231	청호로219번길 48-16	500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주권 수호하는 해양경찰의 헌신과 공로를 알리며,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중 순직한 故 박경조 경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함.	5년
위 치 도					

4. 문 의 처 : 목포시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 (☎ 061-270-8633)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5일

목 포 시 장

1. 조 례 명 : 목포시 건축 조례

2. 개정이유

- 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건축법령의 세분화 및 고도화로 인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업무량 증가에 따른 소요시간 적정 반영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용기준을 완화 조정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부지 내 가설건축물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3. 주요내용

- 목포시 건축 조례 명료화를 위한 “제1항”번호 삭제 (제8조)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에 대한 상위법명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제16조)
-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 휴게시설 가설건축물로 설치가능 (제19조)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명확화(제22조 제2항)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소요시간 적정 반영(제23조)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완화(제33조제1항)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관계 법령 :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전라남도 건축 조례」

7. 관련부서 의견

- | | |
|------------------------|--------|
| ○ 부패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 원안동의 |
|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 원안동의 |
| ○ 예산 상황(기획예산과) | : 해당없음 |
| ○ 규제심사 대상여부 (기획예산과) | : 해당없음 |

8. 입법예고 기간 : 2025. 9. 25. ~ 10. 14.(20일간)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11.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10. 14.까지 목포시장(건축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90), 직접방문 등

※ 보내실 곳 : 우)58613,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건축행정과)

1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건축행정과(전화 : 061-270-8050, FAX : 061-270-3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6조 중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휴게시설은 조립식 구조로 옥상 및 지하에 설치하지 않는 1개층 이하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전라남도 업무대행 건축사로 등록된 자로 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인과 관련 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설계건축사 및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자의 건축사로 지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별표4”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생략)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 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 한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 -----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6조-----.
제19조(가설건축물) ① (생략)	제19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 음)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삭제	
<신설>	4.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 근무환 경개선을 위한 휴게시설은 조립 식 구조로 옥상 및 지하에 설치하 지 않는 1개층 이하의 연면적 30 제곱미터 이하의 시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생략)	제22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시장이 건축물의 설계건축사 및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자의 건축사로 지정한다.
2. 제1호에 따라 시장이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하고자 할 때 지정 및 선정 절차를 따로 둘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1

② 삭제

③ ~ ⑥ (생략)

전라남도 업무대행 건축사로 등록된 자로 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설계건축사 및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자의 건축사로 지정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

1. --- 10미터 -----

2. --- 10미터-----

③ ~ ⑥ (현행과 같음)

[별표 4](당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조례 제23조 관련)

규 모 (연면적 합계)	소요시간(시간)
200제곱미터 미만	2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3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4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5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6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15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20
30만제곱미터 이상	30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 적용(매년 1월 1일 기준, 천원 미만 절사)

산정식 : 엔지니어링대가(시간당)×소요시간×현장조사시 비율 = 대행수수료

예) 2014년 1월 1일 기준 시 334,901원/일(천원 미만 절사)

334,901원 ÷ 8시간 = 41,800원/시간

※ 검사대상 건축물 면적에 따른 수수료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소수점 2자리 이하 절사)

$$Y = \left\{ Y1 - \frac{(X - X2) \times (Y1 - Y2)}{(X1 - X2)} \right\}$$

X:해당면적 X1:큰면적 X2:작은면적
Y:적용시간 Y1:작은면적시간 Y2:큰면적시간

[별표 4](개정)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조례 제23조 관련)

규 모 (연면적 합계)	소요시간(시간)
200제곱미터 미만	3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4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6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7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15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20
30만제곱미터 이상	30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 적용(매년 1월 1일 기준, 천원 미만 절사)

산정식 : 엔지니어링대가(시간당)×소요시간×현장조사시 비율 = 대행수수료

예) 2014년 1월 1일 기준 시 334,901원/일(천원 미만 절사)

334,901원 ÷ 8시간 = 41,800원/시간

※ 검사대상 건축물 면적에 따른 수수료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소수점 2자리 이하 절사)

$$Y = \left\{ Y1 - \frac{(X - X2) \times (Y1 - Y2)}{(X1 - X2)} \right\}$$

X:해당면적 X1:큰면적 X2:작은면적
Y:적용시간 Y1:작은면적시간 Y2:큰면적시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금고 지정 공고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목포시 금고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25.

목 포 시 장

1. 약 정 기 간

○ 2026. 1. 1. ~ 2028. 12. 31. / 3년

2. 금고 지정 금융기관

- 광주은행 : 일반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농협은행 :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기타 기금

3. 목포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평가 결과

- 1위 : 광주은행 총점 884.80점
- 2위 : 농협은행 총점 861.50점